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54호서식 부표](2021.03.16 개정)

(앞쪽)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주식 · 출자지분 양도명세서

1. 주식 발행법인 · 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

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	③ 대표자 성명	

2. 주식 · 출자지분의 구분

주식 · 출자지분의 종류	구분코드	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나목(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)	1	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다목(부동산 등 50% 이상 보유 · 양도)	2	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라목(골프장 등 영위, 부동산 등 80% 이상)	3	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가목(주권상장법인 · 코스닥상장법인)	중소	일반
	4	5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나목(비상장법인)	6	7

3. 주식 · 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

④ 일련번호	주 식 양 도 자			주 식 · 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		
	⑤ 성 명 (법인명)	⑥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⑦ 거주 지국코드	⑧ 양도일	⑨ 취득일	⑩ 주식수 (출자좌수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.

2. 주식・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(별지 제54호서식)”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(출자지분)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.

3.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.

4. 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주식 발행법인・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.

5. 주식・출자지분의 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○표를 합니다.
   ※ 주식구분 중 4・5・6・7로 구분되는 주식이 1・2・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・2・3 주식으로 구분・적습니다.
   -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(주식구분 1)
   -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%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% 초과인 법인의 주식(주식구분 2)
   -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골프장・스키장・휴양콘도미니엄・전문휴양시설을 경영・분양・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% 이상인 법인의 주식(주식구분 3)
   - 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・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(주식구분 4・5)
   - 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(주식구분 6・7)
   ※ 중소기업은 주식(출자지분)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
6. ④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.

7. 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(출자지분)을 양도한 주주(출자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,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⑤성명과 ⑥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(출자지분)을 양도한 주주(출자자)의 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   <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(출자자)의 경우 작성방법>
   - ⑤ 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,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. 일반적으로 머리글자(Initial)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.
   -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.

	구 분	기 재 번 호
(1)	원 칙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)
(2)	(1)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	[개인] 국내거소신고번호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인 경우)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)를 적고,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
(3)	(1),(2)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	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,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(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)

   - ⑦ 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(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)이나 LN(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)을 적습니다.

8. ⑧ 양도일란에는 주식(출자지분)의 양도일을, ⑨ 취득일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.
   - 양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(선입선출법 적용).
   - 일괄 취득한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.

9. ⑩ 주식수(출자좌수)란에는 양도 주식수(출자좌수)를 적습니다.